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의 검찰 불송치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78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4
3.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의 검찰 불송치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5. 1. 13.
3. 회 부 일: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생략) <u><신설></u>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2.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임
(제2조제4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기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학대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과 같은 의미로 아동, 보호자 및 아동학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고, 보호자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며,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유기·
방임행위 또는 성인의 각종 폭력행위나 가혹행위임(동법 제3조).¹⁾

-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등은 아동학대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한 사실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²⁾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1대국회 제410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3. 11. 15.), 9-13.

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벌과 보호처분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벌 대신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아동학대행위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제2조제5호),³⁾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자의 의미를 지님.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등으로 소추조건이 흠결된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원가정(原家庭) 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제26조 및 제27조 등).⁴⁾

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4)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이처럼 보호처분 부과 대상이 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하며(제2조제6호), 아동학대처벌법 제4장에서 아동보호사건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범죄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검사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하고(제28조),⁵⁾ 법원은 형사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사건(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음(제29조).⁶⁾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5)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6)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건 송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건 송치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보육·교육 기관의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범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10조).⁷⁾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⁸⁾이 배제되는 등 고소에서의 특례도 인정됨(제10조의4).⁹⁾

7)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 11. (생략)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 26.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8)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아동학대범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가 유·초·중등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라면, 수사 등을 위하여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먼저 아동학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등은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므로(제2조제3호 단서),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견제출 제도가 인정됨.

- 교육감의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사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사건임(제17조의3).¹⁰⁾

9) 아동학대처벌법

-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10)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 제11조의2(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 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교육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¹¹⁾

다만, 이러한 교육감의 의견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단순히 수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임.

- 교육부에 따르면, 2025. 1. 24.을 기준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11)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 수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됨을 밝히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생략)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생략)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 ② (생략)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227건 중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은 11건이었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8건이었음.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

단위: 건, %

전체	경찰 처리	검찰 처리			
	수사 전 종결	불기소	보호사건 송치	기 소	기 타*
227	64	130	18	11	4
(100.0)	(28.2)	(57.3)	(7.9)	(4.8)	(1.8)

* 기소중지 등

주: 1. 2025. 1. 24. 기준

2. 붉은 색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통상의 경우 사법경찰관에서 검사로의 사건 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¹²⁾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송치가 이루어지나(경찰의 1차적인 수사종결권),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¹³⁾에 따라 모든 아동학대범죄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1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3)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전건(全件)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불기소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47조,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¹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아동학대 처벌법 제24조 등).¹⁵⁾

14)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15)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전건 송치가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음.

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검찰 송치에 관한 개선 논의

□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검찰 송치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의 균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음.

○ 일반적인 형사절차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개선 방안으로 다른 범죄사건의 검찰 송치¹⁶⁾처럼 아동학대범죄사건도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 이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서도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임.
- 2025년 9월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16) 2020. 2. 4.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면서(제245조의5), 검사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요구와 불송치사건의 제수사 요청을 각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97조의2 및 제245조의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전체 사건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법률안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2207639	임호선	2025.01.21.	◦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추가함. ◦ <u>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u> ◦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함.

○ 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으로는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만큼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 이는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셈임.
- 개정안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2025년 9월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법률안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2207762	정성국	2025.01.24.	◦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건으로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인 사건은 검찰 불송치
2207796	최은석	2025.01.24.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중 사법경찰관 무혐의 판단 사건은 검찰 불송치 ◦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 인정
2208801	김태선	2025.03.12.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중 사법경찰관 무혐의 판단 사건은 검찰 불송치 ◦ 사건 불송치 시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에게 불송치 사실 통지

3.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의 검찰 불송치

가. 검토의견

1) 검찰 불송치 도입 관련

□ 개정안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검찰 불송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교육감의 판단과 1차적 수사기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현장의 안정을 신속히 도모하려는 것임.

○ 유·초·중등교육 교원은 아동을 교육·지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¹⁷⁾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등이 장기화되면 교원의 지위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대상 아동과의 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음.

17)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 ③ (생략)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생략)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생략)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 ③ (생략)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생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따라서 교원 지위의 불안정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음.

□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선,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사건은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과 기타 사건으로 나누어져 별도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기타 사건의 경우 계속하여 전건 송치가 이루어지게 됨.

< 검찰 불송치 도입 시 사건 유형별 처리 비교 >

구 분	교육감 의견제출	경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의견제출 사건	○	○	○
	○	×	×
기타 사건	×	○	○
	×	×	○

주: 노란 음영은 현행과 달라지는 부분

- 이 경우 유·초·중등교육 교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나 교육감의 의견제출 대상에는 속하지는 않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¹⁸⁾

○ 또한,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공소 제기 또는 보호사건 처리 여부 등의 판단은 1차적으로는 검사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 일부를 경찰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사건 전체의 효율적·통일적 처리에 영향은 없는지도 불송치 사건 인정 범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개정안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 인정 범위는 교육감의 의견제출 여부 (및 그 내용)과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 먼저, 개정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히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내용임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이러한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 문언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8)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은 유·초·중등교육 교원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영유아에게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생략)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생략)

- 다음으로, 개정안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의견을 불송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여 다른 범죄보다 더 제한된 범위에서만 불송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사건의 송치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규정”)에 따르면, ‘그 밖의 경우’에는 널리 불기소사유가 포함됨.²⁰⁾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0) 수사준칙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뿐만 아니라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 ‘죄가안됨’, 그 밖에 공소제기요건이 흠결된 ‘공소권없음’ 등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동 규정 제51조제1항).

수사준칙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 가.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나. 죄가안됨
 - 다. 공소권없음
- 라. 각하
4. 수사중지
 - 가. 피의자중지
 -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2) 기타 사항 관련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의 검찰 불송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관한 사항이 있음.

-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재수사요청에 관한 규정인 제245조의8은 같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²¹⁾ 해당 규정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특별규정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혐의 이외에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유에 대하여도 불송치결정을 인정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 은폐가 용이하고 자력구제가 어려우며 보호사건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現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현행법이 수사준칙규정상의 불송치결정 대상인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제2항) 등도 제시하고 있음.

□ 경찰청은, 교원의 심리적인 부담과 교육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감 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보육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